

제41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25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1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아니, 다른 절차도 아니고 어차피 새로 사·보임 됐으니까 간사 선임하는 의사일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세요. 의사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 법은 잘 아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최소한 그 절차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김승원 간사, 간사 간 선임 일정은 거쳐야 될 것 아니야, 최소한.

○**김승원 위원** 간사 아직 선임이 안 되셔서, 일단 좀 앉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우리가 통보 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세요.

아직 간사 선임이.....

(장내 소란)

잠깐만요.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장경태 위원** 간사 아니시잖아요! 위원님 자격이 뭔데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면 다 오시든가요. 아무도 안 오셨잖아요, 지금. 혼자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최소한 의사일정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의사일정은 사전에 정하는 거 아니야!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들어오시라고요. 의사일정을 누구랑 합의합니까, 누구랑? 유상범 위원님 뭔데요, 지금? 간사 아니시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 제지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아무도 안 들어오셨는데, 지금 혼자 오셔 가지고 뭘 합의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위원장 제지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여당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그런데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저는 유상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위원 들어가 주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어디를 들어가요?

○**위원장 정청래**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최소한 의사일정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철래**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제가 지금 적어도……

○**위원장 정철래** 들어가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철래** 들어가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의사일정을 합니까?

○**위원장 정철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유상범 위원님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장내 소란)

들어가서 앉으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우리가 처음 모처럼 같이 만나는 건데, 상견례를 이렇게 험하게 할 거 있어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이게 뭡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자기소개도 안 하셨잖아요. 상임위 인사도 안 하고 지금 따지기부터 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앉으셔서 자기소개부터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철래** 앉으세요.

(장내 소란)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김승원 간사,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간사 간 협의는 의사일정에 넣고 간사를 선정하고 의결해서……

○**김승원 위원** 간사 아니시잖아요. 일단 앉으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래서 그 의결을 대신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철래** 민주당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김승원 간사,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서 뭐 할 거예요?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위원장 정철래** 김승원 간사님!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잠깐 의사진행을 할 테니까 좀 들어 주시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어요.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래서 간사 선임을 위한 의사일정을 갖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세요. 그건 위원장 재량이에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오?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예의를 지켜야지, 예의를.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예의가 없어, 이렇게. 그게 말이 돼요?

○**위원장 정청래** 예의가 없어? 없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예의가 없는 거지요, 예의가.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최소한 여야 간에.....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시라고!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들어왔으면 간사 선임 절차를 잡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세요.

그러면 왜 이제 들어왔어요,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 간사 선임할 때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간사 선임을 같이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합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누가 했어요?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그리고 강제 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걸 해 줘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오늘 오전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제22대 국회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셨으므로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곽규택 위원?

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은 들어오셨지요?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님은 안 들어오셨네요.
청가서 제출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곽규택 위원님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런 거나 미리미리 얘기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청가서, 수신 국회의장, 본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청가서를 국회법 3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곽규택’, 허가가 된 겁니까?

○행정실장 이강혁 예.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시간이에요.
인사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못 받아 주는 이유는 뭐니까?

○위원장 정청래 박형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보임 인사도 안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부터 합니까?

○박형수 위원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했지, 언제 안 한 적이 있어요?

○장경태 위원 아니, 보임 인사를 하셔야지요. 지금 상임위원이 아니신 거잖아요. 보임 인사를 하시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유상범 위원 보임됐어, 지금.

○장경태 위원 아니, 인사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박형수 위원 아니, 세상에 인사 먼저 하고 의사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청래 지금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은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구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여야가 같이하는 회의에서 시작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21대 국회의 연장선이 그대로 이어져서 22대 국회로 온 것 같습니다. 법사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많은 여야 위원들의 반성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된 법사위,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 제대로 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불문하고 다 같이 협력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동료 법사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고장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삼선 의원 송석준입니다.

우리 법사위는 모든 부처의 법안들이 올라오는 국회 상임위 중에는 어찌면 가장 모든 것이 통하는 최종적인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여기서 의결되는 사항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아주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임위보다도 보다 더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보다 성실하게, 보다 예의 있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장 모범 상임위의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생과 조화의 고장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민의의 전당 국회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서로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과 꿈을 잘 도와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보여야 될 국회 의원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식 상임위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들,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언성이 오가고 서로 결례되는 이런 언행들이 오간 것은 이제 앞으로는 지극히 지양돼야 할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이런 모습이 다시는 법사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상임위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17대 국회 때 저에게 어떤 의원이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말하길래 진짜 존경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존경하지 않는대요. 그러면 ‘존경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진심을 담아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초선 의원인데요, 외부에서 법사위의 굉장히 다툼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보다가 오늘 이렇게 첫날에 보게 돼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가 대화가 살아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앞에 계시는 동료 위원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뽑아 준 우리 국민들을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는 조금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이분 한 분 한 분과 대화하는 것은 또 이분을 뽑아 주신 국민들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또한 대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감사합니다.

그런 초심이 잘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개원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자 시절에 국정감사를 오셨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또 서영교 위원님을 드디어 법사위에서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반갑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상대방에게 존경한다고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하는’ 그 단어를 굳이 붙이지 마라, 어느 위원이 하는 얘기를 받으셔서 그렇게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위원장님께서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겠지만 위원의 말에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님’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상대방 위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과 갈등만을 야기하려고 한다면 국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회는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 안에서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하고 서로가 설득하고 양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저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시작은 21대와 같이 일방 개원 또 불참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됐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하고 국회에 다시 등원하고 상임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임위 과정에 서로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에서 ‘정치가 4류가 아니라 등외다’라는 평가를 하는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4류로 떨어졌지만 등외로까지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등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팻말을 써서 나무에다가 못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 보고 자기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위원장이 한 말을 지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나무를 사랑합시다’ 해서 못을 박아 놓는 자기모순적 발언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그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할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는 얼마든지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때로는 퇴장도 시킬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것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유상범 위원** 가르치는 식의 대화는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님. 발언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반드시 얻고 말씀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은 위원의 마이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위원장 정청래** 지금은 인사 시간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위원입니다.

첫날부터 가슴이 답답한데요, 국민들이 저희한테 권한을 맡겨서 국회에 보냈을 때는 내 한 표가 부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을 국회로 보냈을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좀 품격을 지키고…… 어렸을 때 저희들이 싸우다가 할 말 없으면 ‘싫으면 시집가라’ 그러면서 싸움을 끌냈는데 그런 식의 상임위 운영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꼭 싸워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생산적으로 싸우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22대 법사위 전반기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반갑습니다.

해운대갑구의 주진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안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른 상임위보다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조건 다수결대로, 표결대로 강행만 한다고 그러면 법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해서 누가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수결의 원리일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토론과 토의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의 장이 치

열한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위원들에게 발언권이나 발언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법사위를 운영하다 보면 공무원분들도 많이 출석하실 것입니다. 공무원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또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사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부터도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의사진행 회의록 시나리오에는 어제 화재 참사로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하기 위해서 잠깐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써 왔는데 여러 가지 관계상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가 끝나고 좀 차분해졌으니, 어제 화재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비는 뜻에서 잠시 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회는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국민의 민생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장소이고, 특히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때로는 갈등 사항이 조정되어서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 부족한 위원장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그 권한만큼 행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국회법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장이 진행하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로 손을 들고 서로 고성이 오가다 보면 위원장석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손을 드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49조와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질서유지권과 감독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퇴장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거나 의사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게끔 특정 위원이 의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14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언중지권과 퇴장권까지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3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여당이 등원을 어제 결정하고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모든 의사일정을 진행할 때는 제일 먼저 여당의 간사, 야당의 간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의 법안 상정 및 의사진행과 같은 부분을 모두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미상정 타위법안 4건이 상정돼 있고, 이걸 논의하기 전에 여당 위원들의 간사 선임 절차를 함으로써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우리가 이 상임위 진행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현재 야당 간사이신 김승원 위원께 미리 전화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간사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간사는 제가 맡기로 돼 있다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협조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야당 간사에게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국회는 여와 야라는 두 날개가 함께 날갯짓을 할 때 결국 제대로 운영이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 날갯짓을 하지 않고 한쪽만 날갯짓을 한다고 국회가 제대로 날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상정 타위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여당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셔서 새롭게 우리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모습을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함께 강제 배정된 저희 법사위 위원들 명단이 새롭게 다 정리되고 오늘 보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장의 결재를 거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뒤이어 상임위 각 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 논의 전에 간사 선정 절차를 마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경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장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일단 우리 법사위가 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했고, 벌써 6월 25일입니다. 27일이나, 한 달여 가까이 공회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법사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보임 인사 이후에 의사진행과 기타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석을 에워싸서 항의부터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에게, 먼저 첫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제안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간사 선출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법사위원들에게 함께 공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됨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우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근차근 현재 기준에 있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가 정말 민심을 더 받들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민심을 받드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정말 민심을 받드는 국회와 더불어, 민심을 받드는 대통령과 입법부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채 해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수사 외압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말 특검법에 대한 많은 국민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당도 들어오셨으니 필요하다면 여당 위원님들에게도 질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채 해병 관련된, 이제 입법청문회는 할 수 없을 테니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현안 청문회라도 재차 개최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청문회가 끝나기 전, 의사봉을 치기 전에 무단으로 퇴장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를 엄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위원회의 결의로 엄중하게 질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이 청문회 종료 의사봉을 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항의하면서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만약 여당 위원님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법무부장관에 대한 엄중한 질타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를 꼭 받아주셔야만이 국회의 준엄한 권위가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 의사진행발언들 같은데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관증인들이 나와 있을 때도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을 빙자하여 실질적인 질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짧고 간단하게 장경태 위원처럼 저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위한 또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실제로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즉문즉답처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안건 상정은 국민의힘에서, 의장의 결재가 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의사진행 안건 상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특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누가 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순서는 먼저 손 드는 순서로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원장 정청래** 손 들었어도 제가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송석준 위원** 알 수 있게 하겠고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손을 잘 들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이것 10초 다시 살려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것도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다시 타이머 작동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존경하고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법사위 상임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잘 배웠습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다만 위원장님은 이런 권한도 있지만 원만하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법사위가 진행되게 할 책임과 의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입장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 있는 발언이 아니라면, 주관적인 성격의 발언이라면 최대한 동료 위원에 대한 평가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들이 발언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발언도 최소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참석은 못 했지만 야당 단독의 청문회장 장면을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권위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모범적인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그야말로 서로가 존중하는 모범 정치문화가 성숙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바로 이곳에서의 모습은 마치 권위주의 시대의 뭔가 독재적인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 정말 국민들 보기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예를 들면 누구든, 여기에 참석한 증인이든 동료 위원이든 또는 같이 참석한 동료 보좌진들이든 사무처 직원이든 또 취재하시는 언론인이든 모두가 다 존경받아야 되고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존중해서, 우리가 법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앞으로 정말 고성 없이 서로 존중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평

가를 자제하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도 가급적 평가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 청문회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등 독재라는 등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도 평가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인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자고 말씀하신 만큼 본인부터 동료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처럼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이 특별히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도 없다. 그래서 위원장 발언도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국회 법사위가 정상화되어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제 옆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는 동안에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다행히 출석은 하셨지만 인사말씀하시는 중에 한 번도 국민들께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과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이후에 확인된 민심에 대해서 그동안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간곡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국회 법사위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수는 없는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그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서술형 종결어미는 위원장에게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그런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그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다른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오늘 기회가 된다면 굳이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더라도 경위야 어찌 되었든 국회 법사위가 또 다른 상임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때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원 구성 협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어찌 되었건 저희들이

원만하게 일찍 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제때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늦게 참석한 만큼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 구성에 관해서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 있고 국회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국회 내에서는 여야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국회의장을 갖지 않은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은 상임 위원장으로 가져야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모든 상임위를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 하나만큼은 저희들이 위원장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서 지켜보셨고, 그동안 국민들께서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석수가 부족하고 저희들이 힘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들께서 채워 주시고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보고 국민들께서 나머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의석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메우는 것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는 데 많이 노력하시겠다는 부분에 절대 공감합니다.

보시다시피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보니까 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한 분씩만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이러이러한 점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의 원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5년째지요, 4년 했고 지금 5년째니까. 재선 의원이 됐으니까요. ‘국회법으로 위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으면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의사진행하는 위원장은 처음 봅니다. 그 조문이 국회법에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조문은 사실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야가 과행을 겪고 있다가 처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야가 함께하는 상임위원회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퇴장시킬 수 있다는 이 발언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위원장이라면 앞으로 원만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협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의사진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청문회를 평가하면서 ‘독재’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건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까지도 다 제지를 한다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세상에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없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은, 야당 위원님들은 매번 검찰독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런 표현이 과도하게 인식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라면 위원장으로서 제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일 때는 그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사위원회 의사진행을 할 때 이러한 점을 위원장님께서 잘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형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이런 법사위, 이런 법사위원회은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회 처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있는 145조 조항은 지금까지 법사위원회들이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가 퇴장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민주당도 검찰독재 하지 않냐,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곳 법사위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동료 위원 평가를 하지 말자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니 민주당에서 청문회 한 것도 그러면 평가하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이것이 꼬리의 꼬리를 물다 보면, 그러면 동료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그 동료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께서 간사 간 협의를 하십시오. 민주당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토 달지 않기, 국민의힘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토 달지 않기 이런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대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위원님,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22대 국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여당과 협상을 했고, 그래도 관행이나 관례보다는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미 민생을 위한 법사위도 출발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국회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그리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질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선서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말만 하겠다, 거짓말하겠다라고 하는 증인도 있었고 또 선서한 후에 본인에게 불리하다면서 국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입을

다문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중간중간 끼어드는 그런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모욕죄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을 잘 검토해서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그와 같은 거짓말이 난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사실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미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의사일정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선정이 되기 전에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법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법에 따르면 간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는 사실 위원장님과 직접 하시는 것이, 요청을 드리는 것이 법에는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주당도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항상 민생을 반드시 그런 당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께서 190석을 야당에게 주어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라든가 또 민생입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다시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자체가 22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지혜로운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모아서 고발조치를 간사님께서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4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안에 대해서 과방위 간사이신 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방송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각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하며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여야 하나 국무회의 참석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우리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닙니다. 타 상위 법안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체계 심사 권한밖에 없습니다. 체계라 함은 다른 법과 충돌 여부이고요 자구는 글귀, 문법이 틀렸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하여 토론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불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제가 22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거의 국민 무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가 22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석자에 불과하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위원장도 해외 인사가 면담 와서 출석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행정실로만 얘기가 됐다는데, 저희 민주당 간사실에도 얘기를…… 저는 통보받은 바가 없고 직원 덜렁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국회 무시 풍조 이것 반드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지난번 청문회 때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출석을 했고 법무부장관은 갑자기 이석을

해서 출행랑, 도망치듯 떠났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오늘 방송통신위원장은 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꾸 국회를 경시하고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책임을 물을 것이고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 대체토론과 관련돼서 제가……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상범 위원** 대체토론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먼저 타 상위 법이 상정이 된 경우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는 장관의 출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장기 대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협의를 거쳐서 합의에 의해서 타위법 상정 시에는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 차관급이 오거나 차관급의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장급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이미 관례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출석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밑의 실장이 와서 답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체토론은 기본적으로 정부위원이 와서 그 법안에 대해서 위원들과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위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체토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출석한 직원이 있다면 현재 위치가 어떤지 파악을 해 보고, 최소한 기획실장 정도는 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기획실장을 상대로 적어도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또 법안의 체계의 정합성 또 헌법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대체토론을 한다는 것은 대체토론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즉문즉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헌법 62조 2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관 출석이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헌법 62조 2항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차관 출석을 불허하고 반드시 장관 출석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불출석은 헌법 62조 2항 위반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앞으로는 타 상위 법안을 토론할 때 그 부처의 최고 책임자이고 권한이 있는 장관들이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해남·완도·진도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제가 법사위원을 12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차관이 나오는 것은 관례지만 법사위 본회의에는 반드시 장관이 나와야 되고 만약 장관 출석이 어려우면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차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대부터 그러한

관행이 잡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사위의 법안 통과에는 반드시 국무위원이 출석해야 되고, 어려우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차관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철저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의 횡포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나라 방송을,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합의제인데 두 사람으로…… 구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4법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원회에 넘기지 마시고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계류한 채 다음 기회에 여당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대체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것과 다른 내용이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요. 중복, 반복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저는 대체토론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체토론이요?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인데 2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안된 법안들이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히 통과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대체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법원조직법 7조 3항과 방통위법 4조 1항을 비교해 놨는데요. 법원조직법은 어떤 취지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합의부가 있습니다. 합의부는 저기 보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라고 돼 있거든요. 만약에 3명이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다가 배석판사 1명이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열 수 없고, 만약에 법원이 재판을 열면 그것은 불법 재판이고, 판사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방통위법 4조 1항을 보면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조문이 ‘구성된 합의부’, ‘구성한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 운영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불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YTN 지분 매각에 관한 가처분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아10636 항고심 결정문인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위 조항 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

지가 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발언한 내용이나 고등법원의 이 결정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인 겁니다.

이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안된 법안을 신속히 우리 위원회가 통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민주당 위원님들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서 법안 내용까지 칼질하고 손질한다 해서 타 상임위에서 여야 구분 없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타 상위 논의 과정에서, 그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표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타 상위 법을 토론할 때 그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맞다.

다만 체계가 잘못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과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을 적용할지 모르는 상태로 법적 미비점이다 이런 체계의 문제 또는 예를 들면 자구의 문제는 표현상 문법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식 표현이다, 그러니 우리 한국 순수 말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체계·자구의 심사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에서 법사위에 부여한 권한인데 이 법을 벗어난 월권행위는 가급적 우리가 자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박지원 선배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의 입을 누가 막느냐, 막을 수가 없다.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와 법안 내용의 경계점이 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무 자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체계·자구 심사만 하자라는 법 조항을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은 좋았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지금 올라왔던 것들은 21대에 통과되지 못했던 법이고 경위야 어찌 되었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되어져서 왔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방통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되기도 어렵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만이라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간사가 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례에 따라서 저희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위원과 민주당의 간사님께서 의사

일정에 관한 협의를 해 주시고, 오늘 간사 선임이 이루어져서 이 의사일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후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지금 대체토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이 법이 적어도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 끝에 통과되었다라고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 기일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체계·자구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다음 회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또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인품도 아주 훌륭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듯 법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관례가 이렇게 됐으니 이 법을 여기서 멈추자,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으나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법도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절차도 소급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절차를 다시 절차를 돌리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많은 절차들이 다 도돌이표가 돼서 더 많은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본인들이 불출석해서 자업자득이라고 악평을 받든 어쨌든 이 절차는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이후에는 절차를 잘 지키고 여야가 서로 원만하게 토론 과정을 거치고 하는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미 절차를 다 마쳐서 왔고 또 방통위원회 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직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방통위원회가 사실은 헌법 62조 2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상태를 본인들이 먼저 저질렀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 법사위가 처리하는 법이 지연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 장동혁 위원님 말씀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토론입니까?**

○**송석준 위원** 이 법안 내용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안 내용과 관련된 의사진행입니까, 토론입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 안 받기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아니고 토론 시간이니까 토론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입니까,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저도 21대 때 과방위에서 활동하면서 방통위 설치법이나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아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고, 결국 이 법의 의미는 정치권 손 떼 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준에 KBS 이사나 방문진 이사, EBS 이사 등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반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사결정권과 해당 전문직과 해당 방송계 또 언론계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구성원들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체계와 자구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송법도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진도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입니까?

○송석준 위원 예, 토론……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저도 자구·체계에 관해서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박동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이 검토 결과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자구·체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 왔는지, 오히려 자구·체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제대로 된 내용을 담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소임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방송 관계 법이, 방송 3법이 지난 21대에 이미 발의가 됐고 논의됐다고 해서 22대에도 유사한 법안이 올라왔으니 절차를 생략해서 올라가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첫째로는 우선 국회의 21대 의원님들과 22대 의원님들은 성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법안이라도 당연히 원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안이 올라와야 되고 또 내용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결함, 법사위 자체에 올라올 수 없는 법안이 올라왔다.

거기다 내용을 또다시 본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한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고 잘된 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적인 시각 또 우리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법안이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편향적 인사들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의 임명권, 방통위의 이사임명권에 대한 제약이 심하다 또 사장의 해임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돼서 사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자의적,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됐고 그 부분이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재의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돼서 부결된 그런 법안 아닙니까? 그 법안을 이번에 22대 되자마자 다시 올리셨어요. 그러면 재의 요구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올려야 되고, 그 올린 법안은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진중한 논의를 거쳐서 제대로 다듬어서 그야말로 이 법사위 자구·체계 검토 이전에 이미 내용이 우리 국가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또 국가 질서와 방송통신 분야의 제대로 된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대로 발의된 법안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보면 도대체, 상임위를 이게 제대로 거쳤습니까? 숙려 기간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소위 심사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거지요.

지금 국회가 원 구성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 처리된 법안은 이제 국회가 여야가 참여해서 정상적인 원 구성이 되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정상적인 원 구성 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이미 그간의 절차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은 바로 우리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논의돼서 국민들 보시기에 문제없는 법안으로 제대로 논의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우리 법사위에서 이렇게 여야 위원이 처음으로 함께 논의하는 방송 3법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공정한 언론 질서 유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러니만큼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우리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그런 시간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간사님 선임을 빨리 좀 해 주셔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인지 법안 토론인지……

○송석준 위원 법안에 대한 토론을 했고요. 제가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셔 갖고.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성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체계·자구 심사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할 얘기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법은 제가 20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법이고 제가 21대도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도 대표발의한 법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으니까 절차를 소급하자 하는 얘기는 가급적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법 지식이 매우 뛰어나지만 실제로 법안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들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체계·자구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없다, 합당하다, 이미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다든지 진짜 이것은 심각한 체계·자구 심사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것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입니까?

○**김승원 위원** 제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하기 전에 법사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21대 때 법사위가 자주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 상임위를 통과한 수백 건의 법안이 헛빛도 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다른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논의한 의원들께 정말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통과가 되기를 열망하는 국민들께도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21대 때 법사위는 옥상옥, 상원의 지위를, 역할을 하지 말고 과감히 체계·자구 심사만 하자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국회법 86조 5항에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타 상위 법안이지요—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봤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께서 예전 과방위에서 심사했던 그 내용, 의견 잘 들었고 여러 위원님 의견 잘 들었는데 제 결론도 그렇습니다. 이번 이 법안은 체계와 자구 어긋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김승원 간사님도 결국은 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성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했습니다, 의사진행성 발언은. 그래서 진짜 알짜 토론하실 위원님들만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형수 위원님은 여러 번 발언하셨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토론을 하는데 여러 번 해도 되는 거지 토론하는데 무슨……

○**주진우 위원** 제가 이게 체계·자구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일단 먼저 지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거의 결론 다 낸 듯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제1항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의사정족수가 5명 중에 4명 이상 있어야 개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른 법률에서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렇게 의사정족수, 회의 자체를 개최하는 데 이렇게 많은 정족수를 요구하는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법사위, 지금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5분의 4가 찬성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하면 회의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수한테 비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체계에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기본적으로 다른 규정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9명, 역시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 체계랑 맞는지의 여부를 대충 여기에서 그냥 몇 마디, 5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답 정해 놓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방송·통신과 관련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차피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 1명 더 있도록 법체계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정부부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2명의 위원이 출석해서 충분히 반론도 제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도 그중에 여당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만든 겁니다.

저희 주장은 뭐니까? 지금 2명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국회가 3명을, 여야 간 저희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해서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5명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2명 체제가 정말로 위법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인데 이 법체계와 맞지도 않게 유독 방통위에 대해서만 4명 이상 한다라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힘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비 상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거나 지금처럼 여야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추천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들이 국회의 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계속해서 마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통위만큼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2인 이상이 개의할 수 있도록 법을 최초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부처와 국회 간 힘의 균형을 이룬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해서 전부 4명 이상으로, 그러면 4명 이상 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라면 또 몇 달간 방통위의 모든 중요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런 상태로 과연 예전에 법을 상정했었느냐,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요.

다른 위원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요건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다른 위원회랑 규정 체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규정 체계에 맞도록 우리가 다 심사숙고하고 다 조사를 해 와서 국민들 앞에서, 여기에서 토의를 함으로써 이 법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 3법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지만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일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어서 추가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토론입니까?

○**박균택 위원** 예, 토론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이 사태가……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토론은 박균택 위원님 하시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토론 신청을 했는데 왜 안 받아 주는 거예요?

○**위원장 정철래** 발언하세요.

○**박균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안 들립니까?

○**위원장 정철래** 발언하세요.

○**박형수 위원** 안 들려요?

○**서영교 위원** 여기 발언하고 나서 하세요.

○**박형수 위원** 제가 먼저 신청했거든요.

○**서영교 위원** 아까 하셨으니까, 처음 신청한 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철래** 다른 위원의 발언시간에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발언하세요.

○**박균택 위원** 왜 이 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추진되는지 우리 위원님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왜 5명 중에 2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2명으로 끝까지 운영을 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국회가 작년 11월 달에 추천한 위원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야겠지요. 분명히 방통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달 안에 결원을 메꾸도록, 임명을 하도록 법이,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입법 과정에서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을 처벌을 하거나 한 달 안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이 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까지 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화한 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5명 중에 2명으로, 자기 편으로만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정부를 탓하기 전에 이 입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너무도 과도하게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뭔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방송 직능단체 등에 관여하는 분들이, 기자나 PD나 또 기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내지는 그 업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일 텐데 그분들을 편향적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내용에 있어서나 이 입법 추진 배경에 있어서나 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 토론 신청합니다.

○**유상범 위원** 대체토론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하시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위원들께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법안 내용은 과방위에서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요. 그리고 국회 밖에서는 20년 동안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17대 국회 방송위원회 풀러스 정보통신부, 방통융합법안소위 위원이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었고요. 이 방통위 설치법은 제가 만든 법입니다, 17대 국회 때.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인데 마치 다른 행정기관처럼, 독임제 기구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발언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5명이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인사가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야당 인사가하도록 균형 있게 만들어 놓은 취지도 독임제처럼 독단적으로 질주하지 말라는 차원입니다. 제가 그 때 법을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방송통신위원 5명 하자는 제안도 제가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옛날 옛적 얘기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과방위 소관이고 이미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성 발언도 자제해 주시고 오로지 토론 내용은 체계·자구 심사에 한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박형수 위원** 체계·자구 심사에서 체계라는 게 뭐니까? 체계라는 것은 이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위헌성 여부 따져야 되고 다른 법률과 이 법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법률의 정합성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역시도 체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계·자구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토론을 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전문위원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토론 안 하면 국회의원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전문위원이 한 그 검토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기본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법사위원들, 야당 위원들 마찬가지고 여당 위원들도 20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못지않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그것을 검토했다, 체계·자구 문제없다고 심사하지 말자고요, 체계·자구를?

이 법률,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률이 다른 법률과 형평이 맞는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

다. 민주주의는 회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이게 기본이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엄격하게 요건을 강화하든지 또는 그것을 완화하든지 우리는 민주주의 회의 운영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은 이것을 5분의 4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의 요건 자체를. 이런 법률이 과연 있는지, 형평에 맞는지, 이게 법률의 정합성 또는 체계에 맞는지 이것은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률 속에 들어 있는 저의는 뭘까요, 4인으로 하는? 왜 이렇게 강화시킬까요? 아까 주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송 위원 추천권이. 대통령 2인,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1인, 그렇지 않은 교섭단체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지요. 야당이 2인을,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개의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네 사람이 되어야 개의할 수 있으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이 법률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이나 법률의 체계 정합성도 무시한 채 이 법률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3법, 예전에 민주당 추진했었잖아요. 추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니까 그것 슬그머니 없어졌지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이 법률이 기본적으로 여러 학회나 단체들에 대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방송공사, KBS 같은 곳에…… 아니, 이게 무슨 학회연합회입니까? 연합회 회장 뽑습니까? 그분들이 다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고 그 이사회는 다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추천하면 승인하고, 이게 무슨…… 학회의 연합회 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영방송,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의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학회, 지역단체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 갖고 뽑도록 하는 이 법률 체계가 과연 법률의 정신에 맞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지금 이 법률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건 100명으로 구성한다,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이사회가 알아서 하도록 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와 규정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건 되돌이표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사회에다 위임한다는 이 자체는 법률의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거기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개 법안 자체를 2소위에 회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체계가 틀렸다는 것은 헌법 몇 조하고 충돌하고 있다, 다른 어떤 법 몇 조와 충돌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토론에 충실한 겁니다. 그게 체계심사의 진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여야 위원님들 구분 없이 헌법 몇 조 위반이다, 어떤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절차를 소급하자거나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성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한 분씩만 토론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고 국민의힘도 한 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21대 국회 마지막에 2소위 또는 1소위에서 통과된 무수히 많은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법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기도 했고요.

수많은 국민들이 그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렸고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했고 법사위원장도 통과시키고 싶어 했고 당시 양쪽 간사도 통과시키고 싶어 했으나 정치적인 문제로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에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법사위가, 22대 국회 만큼은 시작되면 바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이유는 그전처럼 하지 마세요, 그전처럼 정치적인 것에 양쪽 당 국회의원들도 끌려가지 마세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예결위만 끝나고 나면 매년 국회 안에 들어와서 몸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시 여당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이제 여당도 야당도 몸싸움 좀 그만합시다. 그때는 야당이 이제 태클을 걸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몸싸움 그만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야당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쓰거나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서 그다음 국회에도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보좌진들은 공직도 못 하게 하고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진일보한 계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선진화법의 계기가 되고.

22대에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더 합의를 하면 좋겠으나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국힘당 위원들도 이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고 벌써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던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같이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지요. 체계·자구 심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말처럼 전문위원이 검토했어요. 체계상 문제가 없고 자구상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나왔지요, 과반 출석하고 과반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법이 거기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제가 들어 볼까요? 대법관 재판에서는요 3분의 2가 출석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요. 헌법재판관 회의에는요 9명 중에 7명이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따른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5분의 4가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는 겁니다.

말씀처럼 방통위는 아주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여당 혼자 갈 수도 없고 야당이 태클 견다고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합의되는 것으로 가라 그리고 합의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여기 방송·언론 자유, 방송에 여당의 입김과 야당의 입김을 작용하려고 생각하는 것조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올바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방통위원들은 최소한 출석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라고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사례를 듣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3분의 2 출석이 있고요, 헌법재판관들은 9명 중에 7명이 출석해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논리다라고 체계·자구에 들어오지 말고요, 이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제가 상대 위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엄격해야 하는 구조, 헌법재판관들은 9명 중에 7명이 출석해야 되는 사례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방송을 여당이 장악했다고 야당이 장악했다고, 태클 견다고 이러지 말고 독립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지금 22대 들어와서 이 관련 법안은 전혀 토론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충분히 논의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21대 국회의원과 22대 국회의원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구성원이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면 그러면 결국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이 갑자기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박형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체계·자구가 문제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대로 통과시키자 그러면 모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입법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되면 국회의원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본인의 역할을 가지고 제대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체계와 관련되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1항 방통위법의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제안 이유에 2인 이상의 의결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도 그것이 유효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이것을 4인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그 효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법률 구성 자체를 5명의 위원으로 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개의한다…… 그리고 모든 기본적인 회의제의 원칙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의사 정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위원회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모든 게 재적 과반수의 출석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원회가 이렇게 체계가 달라져야 될 이유는 법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고, 정치적인 이유는 4명을 구성함으로써 야당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방통위원회가 열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방통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체계 하나를 바꿈으로써 방통위 운영 전체에 엄청난 장애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법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한 국가기관의 운영 자체를 입법으로써 막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소위에서 지금 참석하지 못한 정부위원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이 법안의 심도 있는 완성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3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가 관련 기관을 살펴보면 직능단체 사람들에게 이사회의 추천권을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부분은.

게다가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을 하는데 그것만 정하고 모든 것을 이사회에 포괄적 위임한다? 이것이야말로 포괄위임 금지의 체계·자구에 전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사장 해임사유를 아주 제한해 가지고…… 개인 비리가 발생하거나 또는 명예 손상하거나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경우, 이것 당연히 해임사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체계·자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소위로 회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안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대체토론은 적어도 원하는 모든 위원 다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것을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유상범 위원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처음 참석한 위원이고 첫 회의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 국회법 제108조 및 제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날 아닙니까, 첫날? 여기 동료 위원께서 대체토론하고자 하시는데……

○**유상범 위원** 아니, 기회는 줘야지요, 충분히.

○**위원장 정청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억지로 회의를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유상범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재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정청래**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발언을 하는데요. 300명 국회의원의 입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병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무슨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사위가 자구·체계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 중 이해충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3대 12년을 법사위 해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익집단의 로비 등을 받아 가지고 이랬을 때는 근본적으로 법사위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거 관례였고 또 어떤 경우에도 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현안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밝혀 두면서 위원장님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적극 참고하겠고요.

체계와 자구 심사 내용으로 얼마든지 정부 측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에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총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야가 가위바위보 해서 150석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헌법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조항 때문에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존중하되 그러나 언제까지 소수를 배려해서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국회가 된다고 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송석준 우재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주진우

○첨가 위원(1인)

곽규택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 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보고사항】**○의안 회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6)

현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3)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2024. 6. 12.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6. 13. 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이상 12건 6월 14일 회부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이상 4건 6월 18일 회부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7)

6월 19일 회부됨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2)

이상 4건 6월 20일 회부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4)

이상 4건 6월 21일 회부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4)

이상 5건 6월 2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570호	2024. 6. 25.	법무부